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나3520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나352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단510000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항소인 C

변론 종결 2014. 12. 9.

판결 선고 2015. 1. 2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단51000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312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위 신용보증약정에'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로, 제3면 제13행의 '위 보증약정에'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로, 같은 면 제15행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로, 같은 면 제16행의 '위 신용보증약정과'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로, 같은 면 제17행의 '지출하하였는데'를 '지출하였는데'로, 제4면 제2행의 '위 부동산에'를 '이 사건 부동산에'로, 같은 면 제9행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 같은 면 제17행의 '위 보증약정에'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로, 같은 면 제18행의 '추가보증료 255,230원,'을 '추가보증료 255,230원 +'로, 제5면 제17행의 '집행권으로'를 '집행권원으로'로, 같은 면 제18행의 '채권보전지용'을 '채권보전비용'으로,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약정하였으므로'를 '약정하여'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갑 7호증의 1 내지 3' 다음에 ', 을다 5, 6, 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A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A 발행의 어음을 수취하였다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 및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이 무자력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의 채무 변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써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시가보다 비싼 2억 1,000만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다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가액을 2억 1,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2. 10. 9. 800만원, 2012. 10. 25. 300만원을 피고의 남편 D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폐업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A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3,000만원 중 1,700만원을 자신의 A에 대한 어음채권과 상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A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A의 채무 변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1억 5,000만원 내지 1억 6,000만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의 임대차계약과 종로광장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6,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사실상 가치가 없어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다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은 2012. 7. 5.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종로광장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5,000만원인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무는 합계 1억 8,000만원이라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2억 1,000만원이고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억 9,400만원 또는 1억 9,500만원이라 주장하고 있었는바(피고의 2014. 3. 12.자 및 2014. 4. 15.자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 참조), 위에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을다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익현

판사이세창

판사강수정

별지